KAIST 수학문제연구회 회칙

2022.12.17., 시행

2022.11.28.,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명칭)

- ① 본회는 KAIST 수학문제연구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 ②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Group이라 표기한다.
- ③ 본회 명칭의 약어로는 수문연, M^2 을 사용한다. M^2 은 Membership & Mathematics를 뜻한다.

제2조(정의 및 목적)

본회는 수학 문제의 교류와 여러 학술활동을 통해 개인의 사고력과 정서를 함양하고 수학적 소질을 계발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더 나아가 수학을 함께 즐기는 문화의 형성과 수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소속으로 동연의 회칙을 준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본회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 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현역회원과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 ② 현역회원은 해당 학기 동아리 활동 명부에 이름을 올려, 동아리 활동 비용을 납부한 회원을 일컫는다.
- ③ 신입회원은 현역회원 중에 해당 학기가 속한 해에 동아리 활동 명부에 새롭게 등록한 회원을 일컫는다.
- ④ 명예회원은 해당 학기 동아리 활동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총 6학기 이상을 본회의 현역회원으로 활동한 자이다. 다만 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6학기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명예회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현역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본회의 현역회원은 의무활동 외의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아니한다.
- ④ 본회의 현역회원은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지불할 의무를 가진다.
- ⑤ 본회의 현역회원은 동아리 내 의무활동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동아리 활동 비용)

- ① 동아리 활동 비용은 학기당 1회 납부한다.
- ② 2학기 미만 활동한 현역회원의 경우 ₩20,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다.
- ③ 2학기 이상 6학기 미만 활동한 현역회원의 경우 ₩40,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다.
- ④ 6학기 이상 활동한 현역회원의 경우 ₩20,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다.
- ⑤ 명예회원은 학기 중 언제라도 회장의 승인을 거쳐 ₩20,000의 활동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한하여 현역회원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⑥ 동아리 활동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현역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⑦ 동아리 활동 비용은 본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원진들의 재량으로 임시적으로 낮출수 있다.
- ⑧ 동아리 활동 비용은 본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현역회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임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보쌈부장

제7조(임원)

-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학술부장, Math Letter 편집부장, 수학동아 편집부장, 홍보부 장, 경시부장을 일컫는다.
- ② 본회의 모든 임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
- ③ 본회의 모든 임원은 같은 직책으로의 연임이 불가능하다.
- ④ 회장과 부회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 ⑤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⑥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시점부터 후임 임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단,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차기 임원의 임기에서 첫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는 권한을 유지한다.

⑦ 선출된 차기 임원은 임기에서 첫 정규학기의 개강 이전에 현 임원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임원으로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8조(대의원)

- ① 대의원은 동연에서 회장의 부재 시에 회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대행하는 회원이다.
- ② 대의원은 제1호와 제2호의 각 1인으로 총 2인을 임명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연 회칙에서 정하는 대의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호에서 2인을 임명한다.
 - 1. 전임 회장
 - 2. 현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

제9조(회장)

-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정기 모임을 준비하고 정기 모임을 진행한다.
- ② 회장은 MT, 개강 파티, 종강 파티, 딸기 파티 등의 친목 행사를 주최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 ③ 회장은 현역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되, 의무활동을 제외한 활동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한다.
- ④ 회장은 동연에 본회의 대표자로 등록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와 분과회의에 참석한다.
- ⑤ 회장은 반기별 활동보고서를 동연에서 지시하는 대로 성실히 작성하며, 그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할 의무를 진다.
- ⑥ 회장은 동아리방 정기 재배치 서류를 동연에서 지시하는 대로 성실히 작성하며, 그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할 의무를 진다.
- ⑦ 회장은 본회의 모든 활동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진다.
- ⑧ 회장은 그 외 임원의 모든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 관리 및 지원한다.
- ⑨ 회장의 선출은 제30조를 따른다.
- ⑩ 회장은 임기 종료 후 후임 회장의 임기 동안 본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한다.

제10조(부회장)

- ① 부회장은 본회의 부대표로서 총무 역할과 회장의 보조 역할을 한다.
- ② 부회장은 동아리의 현역회원으로부터 동아리 활동비용을 징수한다.
- ③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 관리와 집행의 전권을 가진다.

- ④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1년 예산안과 1년 결산을 작성한다.
- ⑤ 부회장은 Math Letter 편집부장과 함께 Math Letter 발간에 관한 비용 및 수익을 관리한다.
- ⑥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에 회장의 본회 내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 ⑦ 부회장의 선출은 제30조를 따른다.

제11조(학술부장)

- ① 학술부장은 본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학술부장은 정기 모임 시 세미나 연사를 관리하며, 정기 모임 세미나를 공지한다.
- ③ 학술부장은 공개 세미나를 비롯한 학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세미나 연사를 관리한다.
- ④ 학술부장은 본회 내에서 운영되는 과목톡방 및 스터디를 관리한다.
- ⑤ 학술부장은 본회에서 외부 학생을 위해 진행하는 헬프데스크를 관리한다.
- ⑥ 학술부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

제12조(Math Letter 편집부장)

- ① Math Letter 편집부장은 구독, 포장, 배송 등 본회의 편집 및 발간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학동아 편집부장과 함께 담당한다.
- ② Math Letter 편집부장은 Math Letter의 발간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 ③ Math Letter 편집부장은 동아리 회원 및 외부인으로부터 Math Letter 아티클을 수집하고, 투고를 독려한다.
- ④ Math Letter 편집부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
- ⑤ Math Letter 편집부장과 수학동아 편집부장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수학동아 편집부장)

- ① 수학동아 편집부장은 본회의 편집 및 발간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Math Letter 편집 부장과 함께 담당한다.
- ② 수학동아 편집부장은 수학동아와 함께 진행하는 <퀴즈킹 & 카이스트> 코너 연재를 관리한다.
- ③ 수학동아 편집부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
- ④ 수학동아 편집부장과 Math Letter 편집부장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부장)

- ① 홍보부장은 본회의 홍보 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홍보부장은 신입회원 선발에 필요한 홍보를 담당한다.
- ③ 홍보부장은 카지노, 공개 세미나 등 대외 활동 홍보를 담당한다.
- ④ 홍보부장은 동아리 레이스 진행을 담당한다.
- ⑤ 홍보부장은 정기 모임, 행사 등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물을 보존한다.
- ⑥ 홍보부장은 본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의 관리를 맡는다.
- ⑦ 홍보부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

제15조(경시부장)

- ① 경시부장은 경시대회 문제풀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경시부장은 경시대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③ 경시부장은 경시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의 모집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경시부장이 정한다.
- ④ 경시부장의 선출은 제31조를 따른다.

제16조(보쌈부장)

- ① 보쌈부장은 본회 신입회원의 임시 대표 역할을 한다.
- ② 보쌈부장은 정기 모임 시 참석 인원에 따라 야식을 주문한다.
- ③ 보쌈부장은 임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신입회원을 대표하는 회원으로서 신입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칙에 따라 수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보쌈부장의 선출은 제32조를 따른다.

제4장 활동

제17조(활동)

- ① 본회의 활동은 교내활동, 대외활동, 편집활동, 친목활동으로 나뉜다.
- ② 교내활동은 정기 모임과 카지노 카페, 동아리 레이스를 포함한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 ③ 대외활동은 학술 교류전과 경시대회 및 각종 캠프 조교 활동을 포함한 KAIST 외에서 참여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④ 편집활동은 Math Letter 발간과 수학동아 <퀴즈킹 & 카이스트> 연재 활동을 포함한 출판 활동을 말한다.
- ⑤ 친목활동은 홈커밍, 개강 파티, 종강 파티, MT를 포함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⑥ 대표활동은 본회의 활동 중 의무활동은 아니지만 대표성과 중요성을 가진 활동으로 어떠한 활동이 대표활동인지는 본 회칙으로 규정한다. 회장은 회원들의 대표활동 참여를 적극독려하여야 하며, 회원들은 대표활동이 대표성과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본회의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⑧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임원진의 의결로 활동의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정기 모임)

- ① 본회의 정기 모임은 시험 기간을 제외한 정규학기 중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루어진다.
- ② 정기 모임은 현역회원의 의무활동이다.
- ③ 회장은 정기 모임을 진행하며 정기 모임은 공지와 세미나, 이후 친목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 ④ 보쌈부장은 정기 모임 친목 시간의 야식 주문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 장이 결정한다.
- ⑤ 학술부장은 정기 모임 세미나를 관리한다.
- ⑥ 홍보부장은 정기 모임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관련 글을 포스팅한다.

제19조(과목톡방)

- ① 과목톡방은 KAIST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관한 자유로운 질문 및 토의를 진행하는 학술활동으로, 해당 과목 수강 여부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과목톡방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에 운영하며, 학술부장은 당해 학기 신입회원 선발 후 1 주 이내에 참가신청을 받아 3인 이상의 신청을 받은 과목톡방을 개설한다.
- ③ 학술부장은 3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목톡방을 상시 추가개설할 수 있다.

④ 학술부장은 모든 과목톡방에 당해 학기 종강 시까지 잔류하여 과목톡방 활동을 감독한다.

제20조(스터디)

- ① 스터디는 KAIST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혹은 그 밖의 수학 관련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동학습 및 토의를 진행하는 학술활동으로, 희망하는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스터디는 원칙적으로 계절학기에 운영하며, 학술부장은 정규학기 종강 후 1주 이내에 참 가신청을 받아 3인 이상의 신청을 받은 스터디를 개설한다.
- ③ 학술부장은 스터디 참가신청 기간에 본회 활동으로 인정되어 제9조의 "활동보고서"에 등 재되는 스터디의 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술부장은 3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터디를 상시 추가 개설할 수 있다.
- ⑤ 각 스터디 내에서는 일정, 장소, 출결, 진도 등을 관리할 팀장을 선출한다. 단, 학술부장은 팀장을 역임할 수 없다.
- ⑥ 학술부장은 모든 스터디 채팅방에 종료 시까지 잔류하여 각 스터디의 팀장과 함께 스터디 활동을 감독한다.
- ⑦ 제3항의 "본회 활동으로 인정되는" 스터디의 팀장은 스터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스터디에 우수·성실하게 참여한 회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금을 학술부에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한 지원 금액의 최댓값은 스터디 참가신청이 완료된 후 부회장이 참가자 수와 본회의 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⑧ 학술부장은 제7항의 "지원금 신청"을 심의한다. 단, 학술부장이 제7항의 "상품"의 지급 대 상자인 경우 그 밖의 임원 1인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은 반려한다.
 - 1. 상품의 지급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상품 지급 대상자가 해당 스터디에 우수·성실하게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3. 상품 중 하나라도 가격이 ₩20,000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
 - 4. 상품 지급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명백한 경우
- ⑨ 부회장은 제8항의 "심의"에서 승인된 지원금을 본회의 재정에서 지급한다.

제21조(카지노 카페)

- ① 본회는 태울석림제(석림태울제) 기간 동안 카지노 카페를 운영한다.
- ② 카지노 카페는 모든 신입회원의 의무활동이다.
- ③ 카지노 카페는 딜러부, 대외부, 재정부, 홍보부 4개의 부서로 나누어서 운영된다.

- ④ 딜러부는 회장이 임시로 임명한 딜러부장에 의해 운영되며 딜러들을 교육한다.
- ⑤ 대외부와 재정부는 부회장에 의해 운영되며 대외부는 행사 준비 및 물품 유통을 담당하고, 재정부는 행사 당일 재정 운영을 담당한다.
- ⑥ 홍보부는 홍보부장에 의해 운영되며 카지노 카페에 대한 모든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 ⑦ 회장은 KAIST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와 시설과 장소를 마련하고, 카지노 카페를 총 감독하다.
- ⑧ 카지노 카페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회장이 결정한다.
- ⑨ 회장은 행사 당일 모든 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카지노 카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22조(동아리 레이스)

- ① 홍보부장은 회원들 간의 친목 활동 증진 및 신입생의 동아리 적응을 위하여 동아리 레이스를 운영한다.
- ② 동아리 레이스는 매 정규학기마다 이루어지는 신입회원의 의무활동이다.
- ③ 동아리 레이스는 해당 학기 현역회원으로 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목표를 달성한 그룹에게 점수를 주어 학기 종료 시점에 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④ 그룹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홍보부장이 정한다.

제23조(학술 교류전)

- ① 본회는 POSTECH 수학 동아리 MARCUS, UNIST 수학물리 동아리 EoE와 교류관계에 있다.
- ② 위 세 동아리는 1년에 두 번 각각 여름과 겨울에 돌아가면서 학술 교류전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술 교류전을 위해 학술부장은 회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한다.
- ④ 학술 교류전은 본회의 대표활동이다.
- ⑤ 회장은 교류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더 나은 교류전이 되도록 꾸준히 다른 동아리의 회장들과 교류한다.

제24조(경시대회)

- ① 경시대회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의 수학 흥미 향상을 위하여 본회가 개최하는 대회를 지칭한다.
- ② 경시대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시부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

- 의 동의를 포함한 임원진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경시대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경시부장을 대표로 하는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④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는 현임 임원이 아닌 최소 4명의 회원과, 경시부장으로 구성한다.
- ⑤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는 경시대회의 출제, 홍보, 운영, 재정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 ⑥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타 단체와 협력하여 경시대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⑦ 경시대회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추후 경시대회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본회의 재정에 환원하여야 한다.
- ⑧ 경시대회 운영을 위하여 경시대회 수익을 제외한 동아리의 재정 수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시부장이 부회장에게 신청한 후 이를 임원진이 의결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는 경시부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⑨ 경시부장을 제외한 경시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회 종료 시 재정 상태와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Math Letter)

- ① Math Letter는 본회에서 1988년도부터 발간해왔던 수학에 대한 아티클, 국내 외 수학올림 피아드, 독자들의 문제 풀이, 영재 교육 소식 등을 담고 있는 간행물이다.
- ② Math Letter는 본회의 존속 기간 동안 격월로 홀수 달마다 무조건 정기 발간을 한다.
- ③ Math Letter 발간은 본회의 대표활동이다.
- ④ Math Letter 편집부장은 Math Letter에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 ⑤ Math Letter 발간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Math Letter 편집부장이 관리하며, Math Letter 발간 비용과 아티클을 투고한 사람에게 적절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다. 이후 남는 수익은 모두 본회의 재정으로 환원한다.
- ⑥ Math Letter의 다른 표기로 MATH LETT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약어로는 ML을 사용한다.

제26조(수학동아 <퀴즈킹 & 카이스트>)

- ① 본회에서는 동아사이언스 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월간지 수학동아에 <퀴즈킹 & 카이스트>라는 코너를 2014년 1월호부터 연재하기 시작하였고,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의 창의력 수학 문제이다.
- ② 수학동아 편집부장은 수학동아의 기자와 연락을 하여서 매월 문제를 제작, 편집하여 보내

- 고 KAIST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연재를 한다.
- ③ 수학동아 편집부장은 <퀴즈킹 & 카이스트> 연재에 대한 관리 및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 ④ 창의력 문제 출제 및 편집과 연재에 필요한 사진 촬영은 동아리의 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퀴즈킹 & 카이스트> 연재는 본회의 대표활동이다.
- ⑥ <퀴즈킹 & 카이스트> 연재로 창출되는 수익은 모두 본회의 재정으로 환원한다.

제27조(친목활동)

- ① 홈커밍은 5년마다 실시되는 본회의 친목활동으로 본회의 회원이었던 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친목활동이다.
- ② 홈커밍 실시 당시 활동기간이 2년 이하인 현역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개강 파티와 종강 파티는 현역회원의 의무활동이다.
- ④ 개강 파티는 매 정규학기 신입회원이 들어온 첫 정기 모임 일자에 이루어진다.
- ⑤ 종강 파티는 매 정규학기 마지막 정기 모임 일자에 이루어진다.
- ⑥ 회장은 임원 및 일부 회원들과 함께 매 학기 MT를 기획한다.
- ⑦ MT는 본회의 대표활동이다.

제5장 운영

제28조(재정)

- ①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한다.
- ②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들이 납부한 동아리 활동 비용과 동연의 지원금, 편집활동 수익, 카지노 카페 수익, 경시대회 수익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시대회 수익은 경시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감독한다.
- ④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비용을 징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⑤ 부회장은 본회의 재정을 위하여 동연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진다.
- ⑥ Math Letter 편집부장은 부회장의 협조를 받아 Math Letter 발간 비용과 수익을 관리한다.
- ⑦ 경시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시대회 수익을 제외한 본회의 재정 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경 우 경시부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의 동의를 포함한 임원진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수고비)

- ① 본회의 모든 임원과 보쌈부장, 경시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임기 종료 시 재정 상태와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고비의 액수는 차기 임원진이 산정한다. 단, 연임한 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임원은 산정에 참가할 수 없다.
- ③ 임원의 수고비의 가능한 최댓값은 ₩150,000으로, 보쌈부장의 수고비의 가능한 최댓값은 그 절반으로 한다.
- ④ 경시부장을 제외한 경시대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고비의 가능한 최댓값은 ₩40,000으로 한다.
- ⑤ 수고비의 산정은 현, 차기 임원진이 아닌 회원 중 감사 인원 지원자 전원이 감사한다.

제30조(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모든 현역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③ 1학기 이상 활동한 현역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매해 가을학기 마지막 정기 모임에 진행하며, 해당 정기 모임에 참석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 지원자를 전원 후보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단, 회장의 선거를 우선 실시하며, 회장 당선자는 부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 ⑤ 현역회원 1/3 이상이 투표한 경우,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자로 확정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의 과반일 시 당선으로 인정한다.
- ⑥ 제5항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존재하나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 위 득표자만을 입후보하여 재선거를 진행한다.
- ⑦ 현역회원 1/3 미만이 투표한 경우,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 2/3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는 당선자로 확정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투표가 기권을 제외한 재석 현역회원 2/3 이상일 시 당선으로 인정한다.
- ⑧ 제7항에서 복수의 후보자가 존재하나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순 위 득표자만을 입후보하여 재선거를 진행한다.
- ⑨ 재선거에서도 당선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당선자가 발생할 때까지 제4항의 후보 지원부터 반복한다.

제31조(임원의 임명)

- ① 학술부장과 Math Letter 편집부장, 수학동아 편집부장, 홍보부장, 경시부장의 선출은 본 조항을 따른다.
- ② 상기 임원은 제30조의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이 완료된 직후, 해당 직책의 현임 임원과 새롭게 선출된 회장이 협의를 통해 차기 임원을 결정하여 즉시 임명한다. 단,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임명할 수 없다.

제32조(보쌈부장의 선거)

- ① 보쌈부장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모든 신입회원은 보쌈부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③ 보쌈부장의 인원은 선거 진행 이전에 해당 학기의 회장이 1인 이상 3인 이하로 정한다.
- ④ 보쌈부장의 선출은 봄학기 신입회원 선발 후 두 번째 정기 모임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정기 모임 참석 회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신입회원 중 지원자를 전원 후보로 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⑤ 후보자의 수가 보쌈부장의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각각의 지원자에 대해 기권 없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더 많은 찬성을 얻은 순서대로 당선된다. 단, 동표에 의해 당선자를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남은 보쌈부장 인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재차 진행한다.
- ⑥ 후보자의 수가 보쌈부장의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후보자 전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33조(총회)

- ① 총회는 본회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부회장을 임시 의장으로 한다.
- ③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2. 임원의 탄핵안의 심의 및 의결
 - 3. 회원의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4. 회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 회장의 선출
 - 5.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발의된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 1. 본 회칙 제36조에 의해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경우
- 2. 본 회칙 제34조에 의해 임원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 3. 본 회칙 제35조에 의해 회원의 제명안이 발의된 경우
- 4. 본 회칙 제34조에 의해 회장의 보궐선거가 시행될 경우
- 5.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6. 현역회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⑤ 총회는 가까운 정기 모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안건에 대한 공고 및 논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1회에 한하여 그 차기의 정기 모임으로 미룰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정기 모임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장은 긴급 총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즉시 처리할 수 있다. 단, 긴급 총회의 소집은 24시간 이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 ⑦ 총회는 재적 현역회원 1/3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 ⑧ 본 회칙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 총회의 안건은 현역회원 1/3 이상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적 현역회원 1/3 이상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임원의 탄핵과 보궐 선출)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과반수의 요구
 - 2. 현역회원 1/4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
-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회장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2/3 이상의 요구
 - 2. 현역회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한 요구
- ③ 탄핵 소추된 임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현역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한다. 이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탄핵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④ 탄핵된 임원은 이후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수고비를 받을 수 없다.

- ⑤ 회장 또는 부회장이 아닌 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차기 임원을 회장이 임명한다.
- ⑥ 부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부 회장을 선출한다.
- ⑦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 ⑧ 회장 및 부회장의 보궐선거 시 선거 방식은 제30조의 방식을 준용한다. 단, 부회장이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부회장의 직을 상실하며, 부회장의 자리는 공석이 된다.

제35조(제명)

- ①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현역회원 1/5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제명안을 상정할 수 있다.
 - 1. 본회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2.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 3.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 ② 제명안이 상정된 경우 회장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될 경우 발의되어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단, 과반수의 현역회원이 제명안에 참여하였을 경우 회장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 ③ 제명안의 의결은 재적 현역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명안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의 형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36조(회칙 개정)

- 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회장의 발의
 -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과반수의 발의
 - 3. 현역회원 1/5 이상의 연서를 통한 발의
- ②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 되어야 한다.
- ③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 기간이 지난 이후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심의 및 의결

한다.

- ④ 회칙 개정안은 찬반 투표를 통하여 재적 현역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현역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회장은 이를 1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⑤ 부칙에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없는 한, 확정된 회칙은 공고 후 3일 후에 발효된다.
- ⑥ 임원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의 변경, 수고비 상한 인상을 위한 회칙 개정은 해당 회 칙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시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행위) 종전의 규정에서 KSMT부장의 직책을 가진 임원은 이 회 칙의 시행 전에 제24조에 따른 경시대회의 개최를 준비할 수 있다.

제3조(임원의 직책과 직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책을 역임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 KSMT부장의 직책을 임명 받은 이는 경시부장의 직책을 역임하며 본 회칙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